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7210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721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610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피고, 항소인C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현정

변론 종결2020. 6. 16.

판결 선고2020. 7. 14.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610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85,9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용한

판사노태현

판사김창현